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13
----------	-------

발의연월일 : 2026. 10. 01.

발 의 자 : 서영교 · 정준호 · 윤준병
임오경 · 박용갑 · 민병덕
박균택 · 박지원 · 진선미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① ----- ----- ----- -----. ----- -- <u>2028년 12월 31일까지</u> -- ----- ----- ----- ----- ----- ----- ----- -----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②② (생략)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 이 경

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8년 1
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